

보도일시	2021. 3. 30.(화) 석간 * 인터넷 2021. 3. 30.(화) 10:00 이후 / 총 14쪽		
부처합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과 장 이현옥 사무관 김수영	044-202-7269 044-202-7295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과 장 이상돈 사무관 연민영	044-203-6377 044-203-6375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부 장 김호연 과 장 이윤주	052-714-8211 052-714-82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회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반가운 연구위원 조성익	044-415-5101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

- ◆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 ◆ 2021년도부터 민간부문 인증기준 및 관리 강화, 심사지표 개선 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3월 30일(화) 공동으로 공고하고,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5월 31일(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여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대기업 심사지표 43개 → 42개, 중소기업 심사지표 32개 → 27개

-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 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으며,

*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기업, 법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법, 국세법 등), 사회적 물의 기업

- 사업공고에 신청 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을 인증했다.

※ 공고일 기준 유효 인증기관: 민간 203개(대기업 31, 중소기업 155, 선취업후학습 17), 공공 14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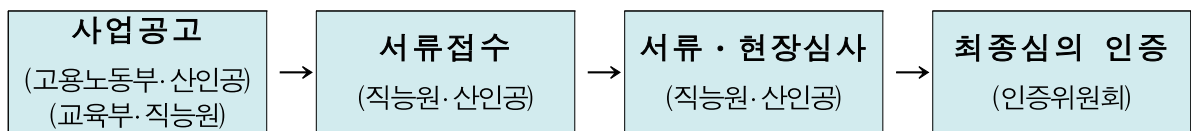
-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 (신청·접수) 2021. 3. 30.(화) ~5. 31.(월)

○ (인증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심사(1단계) 및 현장심사(2단계) → 인증

* 공공부문·대·중소기업 700점 이상, 선취업 후학습 기업 70점 이상일 경우 인증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Best HRD 인증 로고 》

* 승리의 월계수 잎과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



- 아울러,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적자원관리·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을 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ttp://www.hrd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사업 공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김수영 사무관(☎044-202-7295),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호연 부장(☎052-714-8211)에게, 공공부문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연민영 사무관(☎044-203-637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성익 연구위원(☎044-415-510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교육부 공고 제2021- 호

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문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30.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2.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기타 관계 부처 협의 확정기관

- (민간부문)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① (대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②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③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능력중심 고졸자 채용, 고졸근로자 진학·국가자격증 취득 등 후학습에 대한 지원 우수기업

*선취업: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고 특화과정, 인문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후학습: 재직자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야간·계약학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학점취득(학위취득), 국가자격증 취득 등

나. 신청제한

- (공공부문)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인적자원개발(HRD)관련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민간부문)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인적자원개발(HRD)관련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법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 등은 신청 불가 ☞ (참고1)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①근로기준법 ②최저임금법 ③남녀고용평등법 ④임금채권보장법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⑥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⑦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⑧근로복지기본법 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⑫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⑮산업안전보건법 ⑯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⑰고용보험법 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⑲중대재해기업처벌법(2022.1.27.시행)

다.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 기관 및 '17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 (재인증) '18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라. 신청방법

- (제출기간) 2021. 3. 30.(화) ~ 5. 31.(월) 18:00 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소정양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심사 보고서 5부, 관련 증빙서류 1부
- (접 수 처)

민간부문 접수처

-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7. 문의처 및 세부사항 안내)
- ▶ 신청서 서식 및 세부사항 상세안내
- HRD4U(www.hrd4u.or.kr) > 인적자원개발인증 > 사업소개

공공부문 접수처

- ▶ 이메일 : best-hrd@krivet.re.kr
- ▶ 우편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1014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회정책연구센터 인증사업 담당자
- ▶ 신청서 서식 및 세부사항 상세안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제출 기간 경과 후 임의 변경 불가
- 메일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마감일 이후 접수 분은 폐기 처리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심사기준

가. 심사 기준

-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역량 및 우수성 심사 (참고2), (참고3)
 - ① 인적자원관리(HRM): 인사관리체계 수립, 채용·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인사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역량개발 제도 운영 등
 - ② 인적자원개발(HRD): 인재육성계획, HRM과 HRD 연계 정도, 교육훈련 참여도·교육훈련 투자 정도, 인적자원개발·개인 역량개발 평가·피드백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고졸 근로자 고용, 후학습 지원, 후학습 후 처우개선(인사, 급여), 선취업-후학습 장려 문화, 선취업 근로자 육성 등

나. 심사 시 우대사항

공공부문 심사 시 평가 우대사항

- ①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관
- ② 특성화고 협약체결기관
- ③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고용노동부)
- ④ 가족친화 인증기관('18~'20년, 여성가족부)
- ⑤ 일학습병행 참여기관(HRD-net (www.hrd.go.kr)에 등록된 일학습병행 승인기관)
- ⑥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 ⑦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기관
- ⑧ 선취업-후학습 우수기관

민간부문 심사 시 평가 우대 사항

분야	가점 사항	비고	
대기업 (8개)	①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3점	인적 자원 관리 (HRM) 가점 누적
	④가족친화인증기업 ⑤일학습병행 참여기업 ⑥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⑦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⑧사업내자격검정사업 참여기업	+5점	
중소기업 (9개)	①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3점	
	④가족친화인증기업 ⑤일학습병행 참여기업 ⑥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⑦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⑧사업내자격검정사업 참여기업 ⑨NCS기반 기업 활용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선정일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간)	+5점	
선취업- 후학습 (11개)	①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숙련 기술참여모범사업체 ④가족친화인증기업 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⑥노사문화우 수기업 ⑦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⑧사업내자격검정사업 참여기업 ⑨NCS기반 기업 활용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2년간)	+2점	택1, 최고 가점5점
	⑩일학습병행 참여기업 ⑪현장실습선도기업	+5점	

4. 선정 절차

가. **심사 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실시

- ① 1차(서류심사) :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반영,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 대상 선정
- ② 2차(현장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 심사(기준점수 이상인 민간부문 재인증 기업 제외)

* HRD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선정 기준** :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공·대기업·중소기업)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취득

※ 단, 인적자원관리부문 240점 미만, 인적자원개발부문 360점 미만인 경우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

5. 인증수여 및 인증혜택

가. **인증 수여** : 유효기간 3년('21~'23)의 인증서 수여

- (공공부문) 교육부(총괄), 인사혁신처 2개 부처 공동명의로 인증서 수여
- (민간부문) 고용노동부(총괄),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공동명의로 인증서 수여

나. **인증 혜택** : 인증서(패) 수여 외에 다양한 혜택 제공

- (공공부문)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 최우수인증기관(4개 기관) 담당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인증기관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 (민간부문)

부처별	주요내용	비 고
고용 노동부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공 통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최고득점 기관 담당직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가점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대한민국일자리 으뜸기업,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시 가점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공 통
중소벤처 기업부	일자리창출촉진자금(장기·저리) 지원 대상	선취업-후학습 중 중소기업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가점(5점)	중소기업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5점)	중소기업
기 타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공 통
	인증기관 사례 홍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다. **탈락기관 컨설팅** : 인증 탈락기관 중 희망기관(공공/민간), 심사결과 하위기관 중 희망기관(공공) 등에 대해 인적자원개발 현황 진단·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HRD 컨설팅 지원

6. 향후 일정

- 심사 및 인증기관 확정 : '21년 6~8월
- 인증수여식 개최 : '21년 9월

7. 문의처 및 세부사항 안내

- 제출서류 양식 및 사업 세부사항 안내 사이트

-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HRD 콘텐츠 (www.hrd4u.or.kr)
- ▶ HRD-Net (www.hrd.go.kr)

○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27개 지부·지사 직업능력개발부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460
서울서부지사	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	03302	02-2024-1733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7225	02-6907-7178
강원지사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24408	033-248-8508
강원동부지사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25440	033-650-5713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051-330-1956
부산남부지사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48518	051-620-1933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51519	055-212-7215
울산지사	울산 중구 종가로 347	44538	052-220-3233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14
경북지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36616	054-840-3017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37580	054-230-3221
경북서부지사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2층	39371	054-713-3002
인천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032-820-8607
경기지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16626	031-249-1206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11780	031-850-9136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13313	031-750-6262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2층,3층	17561	031-615-9050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34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54852	063-210-9205
전남지사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57948	061-720-8528
전남서부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58604	061-288-3319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63220	064-729-0723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042-580-9112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28456	043-279-9015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31081	041-620-7615
세종지사	세종 한누리대로 296, 5층	30128	044-410-8014
본부 능력개발기획부	울산 중구 종가로 345	44538	052-714-8212

○ (공공부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회정책연구센터 인증사업 담당자

- ✉ 이메일: best-hrd@krivet.re.kr / ☎ 전화 : 044-415-3941

참고 1 (민간부문) 결격기준 안내

✓ 최근 3년(공고일 기준) 이내

- ①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
-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④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참고 2

(민간부문) 2021년 Best HRD 인증심사 지표

□ 대기업

부분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A. 인적자원 관리 (400점)	A1 기획 인프라 (150)	A.1.1 인사계획(60)	A1.1.1 회사비전(전략)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계획 수립의 적절성	30
			A1.1.2 인사계획에 구성원 참여 수준	20
			A1.1.3 인사에 관한 정부 시책 반영의 적절성	10
		A.1.2 인프라 구축 (90)	A1.2.1 인사 관련 사내규정 활용 수준	20
			A1.2.2 선발/평가시 능력중심 역량측정 도구개발 및 활용 수준	30
			A1.2.3 e-HRM시스템 구축정도(e-HR 통합시스템 포함)	20
	A1.2.4 노사관계의 파트너십 구축 정도		20	
	A2 활용 (160)	A.2.1 채용(90)	A2.1.1 부서별 능력중심 인력 수요조사의 적절성	30
			A2.1.2 능력중심 채용절차의 적절성	30
			A2.1.3 채용인력 유지율	30
		A.2.2 직원관리(70)	A2.2.1 능력중심 핵심인재관리 수준	20
			A2.2.2 능력중심의 인재 육성경로 활용 수준	30
			A2.2.3 퇴직지원제도의 적절성	20
	A3 평가보상 (90)	A.3.1 성과평가(60)	A3.1.1 평가정보 공개 및 피드백 정도	20
			A3.1.2 조직의 목표와 개인 목표와의 연계정도	30
			A3.1.3 평가결과에 따른 역량개발 연계정도	10
		A.3.2 승진보상(30)	A3.2.1 능력중심 승진제도의 공정성	10
			A3.2.2 성과평가에 기반한 보상제 시행	10
A3.2.3 복리후생제도 다양성			10	
B. 인적자원 개발 (600점)	B.1 기획 인프라 (300)	B.1.1 HRD기획(120)	B.1.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CEO의 의지	40
			B.1.1.2 HRD 활동과 기업 비전/미션/사업전략의 연계성	30
			B.1.1.3 중장기 능력중심 인재육성체계 수립의 적절성	30
			B.1.1.4 정기적인 HRD 요구 분석 및 반영 수준	20
		B.1.2 인프라 구축(120)	B.1.2.1 HRM과 HRD 연계성	30
			B.1.2.2 온오프라인 교육인프라 활용 수준	20
			B.1.2.3 HRD 조직/담당자 활용 수준	20
			B.1.2.4 능력중심 역량정의 및 활용 수준	30
			B.1.2.5 e-HRD시스템 구축정도	20
		B.1.3 인적자원개발투자 (60)	B.1.3.1 1인당 연간 교육훈련비용	30
			B.1.3.2 1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30
		B.2 운영 (200)	B.2.1 학습조직화(60)	B.2.1.1 학습조직 활동 설계의 체계성
	B.2.1.2 학습조직 활동의 활성화 수준			30
	B.2.2 교육 프로그램(90)		B.2.2.1 능력중심의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도	30
			B.2.2.2 강사전문성 및 관리 수준	10
			B.2.2.3 구성원의 교육훈련 참여 자율성	30
			B.2.2.4 학습활동 모니터링 및 촉진 수준	20
	B.2.3 경력개발(50)		B.2.3.1 능력중심의 경력설계지원 수준	30
B.2.3.2 개인 경력개발 계획 관리 수준		20		
B.3 결과 (100)	B.3.1 평가 및 피드백(60)	B.3.1.1 체계적인 평가방법의 활용 수준	30	
		B.3.1.2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효과	30	
	B.3.2 기여도(40)	B.3.2.1 교육목표 대비 실적	20	
		B.3.2.2 인적자원개발의 조직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	20	
합계				1,000

□ 중소기업

부문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A 인적자원 관리 (400점)	A1 기획 인프라 (140)	A1.1 인사계획(50)	A1.1.1 회사비전(전략)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계획 수립의 적절성	50
		A1.2 인프라구축(90)	A1.2.1 인사 관련 사내규정 활용 수준	30
			A1.2.2 능력중심의 선발/평가기준 정립 수준	30
			A1.2.3 노사관계의 파트너십 구축 정도	30
	A2 활용 (140)	A2.1 채용(90)	A2.1.1 능력중심 채용절차의 적절성	40
		A2.1.2 채용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 정도	50	
	A2.2 직원관리(50)	A2.2.1 능력중심의 인재 육성경로 활용 수준	50	
		A3 평가보상 (120)	A3.1 성과평가(60)	A3.1.1 성과평가체계의 적절성
	A3.1.2 조직의 목표와 개인 목표와의 연계정도		30	
	A3.2 승진보상(60)		A3.2.1 능력중심 평가결과에 따른 승진 및 보상제 시행 수준	30
			A3.2.2 복리후생제도 다양성	30
	B 인적자원 개발 (600점)	B.1 기획 인프라 (300)	B.1.1 HRD기획(140)	B.1.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CEO의 의지
B.1.1.2 HRD 활동과 기업 비전/미션/사업전략의 연계성				40
B.1.1.3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구성원 공유 수준				40
B.1.2 인프라 구축(80)			B.1.2.1 교육훈련결과와 인사고과의 연계성	30
			B.1.2.2 온오프라인 교육인프라 활용 수준	20
			B.1.2.3 HRD 담당자 활용 수준	30
B.1.3 인적자원 개발 투자(80)		B.1.3.1 1인당 연간 교육훈련비용	40	
		B.1.3.2 1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40	
B.2 운영 (200)		B.2.1 학습 조직화(80)	B.2.1.1 학습조직 활동 설계의 체계성	40
			B.2.1.2 학습조직 활동의 활성화 수준	40
		B.2.2 교육 프로그램(80)	B.2.2.1 능력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정도	40
			B.2.2.2 학습활동 모니터링 및 촉진 수준	40
B.2.3 경력개발(40)	B.2.3.1 능력중심 인재 육성경로의 체계성	40		
	B.3 결과 (100)	B.3.1 평가 및 피드백 (60)	B.3.1.1 교육훈련 평가기준 수립 여부 및 실행 수준	30
B.3.1.2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노력			30	
B.3.2 기여도(40)		B.3.2.1 인적자원개발의 조직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	40	
합계				1,000

□ 선취업후학습 기업

평가영역	평가항목/지표	배점
고용 (30)	1.1 선취업 근로자 비중	10
	1.2 선취업 근로자 고용유지율	7
	1.3 선취업 근로자 고용증가율	6
	1.4 고졸 채용 활성화 노력	7
지원 (20)	2.1 CEO의 의지	8
	2.2 후학습률	7
	2.3 근로자의 후학습 지원노력	5
인사보상 (20)	3.1 후학습 후 인사 우대노력	12
	3.2 후학습 후 보상 노력	8
조직문화 (10)	4.1 선취업-후학습 지원분위기	5
	4.2 고졸취업, 선취업-후학습 관련 직원대표회의 또는 노조와의 협의	5
육성 (10)	5.1 선취업 근로자 육성로드맵 여부	5
	5.2 선취업 근로자 경력관리	5
성과(10)	6.1 선취업-후학습 도입에 따른 기업기여도	5
	6.2 선취업 근로자 직무·조직만족도 향상	5
합계		100

참고 3

[공공부문] 2021년 Best HRD 인증심사 지표

부문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A. 인적 자원 관리 (400)	A.1 인사관리 기반 (90)	A.1.1 인사기획 및 전략(40)	A.1.1.1 기관 경영에 근거한 인사관리체계 수립	10	
			A.1.1.2 역량기반 인사관리 기획	10	
			A.1.1.3 인사에 관한 정부시책 반영	20	
		A.1.2 인력계획(50)	A.1.2.1 역량모델 계획 수립 및 운영	20	
			A.1.2.2 부서별 인력 수요 조사	20	
			A.1.2.3 다원화된 인사관리 방법	10	
	A.2 인적 자원 관리 체제 구축과 운영 (140)	A.2.1 채용(40)	A.2.1.1 역량중심 채용	20	
			A.2.1.2 채용 방식의 다양성	20	
		A.2.2 인사평가(20)	A.2.2.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의 정립	20	
			A.2.3 배치 및 인사이동(40)	A.2.3.1 배치이동의 상세 경로 설정	20
		A.2.3.2 체계적인 경력관리 시행		20	
		A.2.4 승진(40)	A.2.4.1 개인의 업적 및 역량에 기반한 승진	20	
	A.2.4.2 승진제도의 합리성		20		
	A.3 성과 목표 관리 (80)	A.3.1 목표 수립 및 관리(40)	A.3.1.1 조직과 개인 목표의 연계성	10	
			A.3.1.2 설정목표의 공유성	10	
			A.3.1.3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20	
		A.3.2 결과 공개 및 환류(40)	A.3.2.1 성과평가 결과 정보의 공개	20	
	A.3.2.2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에 대한 평가결과의 반영		20		
	A.4 역량개발 제도운영 (90)	A.4.1 경력개발 체제(50)	A.4.1.1 역량중심의 경력관리 시행	30	
			A.4.1.2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상체제 시행	20	
A.4.2 능력개발 인프라(40)		A.4.2.1 개인의 자기개발 노력 유도 및 동기 부여	20		
		A.4.2.2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경로의 다양화 노력	20		
B. 인적 자원 개발 (600)	B.1 기획 및 인프라 (200)	B.1.1 기획(120)	B.1.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30	
			B.1.1.2 체계적인 인재육성 계획 수립	50	
			B.1.1.3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 수립	40	
		B.1.2 인프라(80)	B.1.2.1 HRM과 HRD의 연계 정도	50	
			B.1.2.2 새로운 교육방식 및 교수기법 도입 노력		30
	B.2 운영 (300)	B.2.1 학습조직화 (100)	B.2.1.1 현업부서 내 교육학습 실행 정도	40	
			B.2.1.2 학습조직 활성화 정도	30	
			B.2.1.3 집합교육 이외의 학습활동 정도	30	
		B.2.2 교육훈련 참여 및 자율성(80)	B.2.2.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	40	
			B.2.2.2 개인 스스로 교육학습 실행정도	40	
		B.2.3 인적자원개발 투자(120)	B.2.3.1 1인당 연간 교육훈련 비용	60	
	B.2.3.2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시간		60		
	B.3 평가 (100)	B.3.1 결과 및 피드백(100)	B.3.1.1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 계획 실적	50	
			B.3.1.2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효과	30	
B.3.1.3 인적자원개발의 조직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			20		
합계				1,000	